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44
----------	-----

제출연월일 : 2008. 6. 23.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학교급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 나.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등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다. 학교급식 지원계획, 지원신청의 방법 및 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 라.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교육청 및 자치구와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8. 5. 23. ~ 6. 1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우수 식재료의 사용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한 급식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
 -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식재료의 공급방안
2. 급식시설·설비의 확충·개선에 관한 지원방안
3. 우수 식재료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지원 분담방안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교육감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감 및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지역 교육청을 거쳐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대상시설의 총 인원수 및 급식대상 인원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 및 구청장은 신청서를 집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신청서식, 절차, 시기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급식경비 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

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경비 지원규모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업무 관련 실·국장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업무 관련 국장
4.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농·축·수산업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급식관련 업체의 임원
7.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⑩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시장, 교육감 및 구청장은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 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급식으로 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2. “급식학교”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p> <p>3.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이상의 표준규격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p> <p>4. “식품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산물구입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p> <p>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p>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p> <p>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p> <p>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p> <p>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p> <p>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p> <p>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매년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예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대상 학생 수 3. 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급식 시행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p>②교육감은 신청서를 집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 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p> <p>③신청서식, 절차,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 (지원신청) ①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지역 교육청을 거쳐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대상시설의 총 인원수 및 급식대상 인원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②교육감 및 구청장은 신청서를 집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그 밖에 신청서식, 절차, 시기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지원방법) ①시장과 교육감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시장과 교육감은 우수농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p> <p>③학교급식 경비부담비율 및 지원기준, 식품비 지원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급식경비 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②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p> <p>③시장은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식품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및 관련실·국장 3.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련국장 4. 학부모단체 임원 5. 교원단체 및 농민단체 임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식경비 지원규모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업무 관련 실·국장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업무 관련 국장 4.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농·축·수산업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급식관련 업체의 임원 7.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현 행	개 정 안
	<p>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⑧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⑩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제2호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준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법 제9조제2항제3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준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산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품질인증)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07.3.27]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 중점관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원 등) ①농림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품질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